

경 력 환 산 기 준

1. 교육경력

적용대상경력	적용율	비고
· 서울문화재단 어린이·청소년 TA 근무 경력 ·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소속 학교예술강사 근무경력 (연간 240시수 이상인 경우 1년 인정) · 국공립 문화기관/시설/단체에서의 예술교육 경력 (연간 240시수 이상인 경우 1년 인정) · 교과부에 등록된 초중등학교에서의 예술교육 경력 (연간 240시수 이상인 경우 1년 인정)	100%	① 서울지역 학교예술강사 1인 평균 수업 시수를 참고로 산정함. ② 좌측의 적용대상경력 외에 민간교습소 및 사설학원경력 등의 경우는 수업 시수 50% 적용함.

- 위 기준은 해당기관 또는 업체(단체)의 경력증명이 가능한 경력에 한하여 적용한다.
- 경력증명이 가능한 연간 교육경력을 합산하여 적용한다.
 (경력증명서 내 확인 가능한 수업시수 혹은 수업일수 기재 필수)
- 적용 대상 경력은 해당 퇴직일을 기준으로 하되, 재직 중인 경우 신청서 작성일로 한다.

2. 예술 창작경력

- 장르를 불문하고 연간 1건 이상의 예술 창작활동을 진행한 경우 이를 경력으로 인정한다.
 (기관 지원사업 선정에 따른 활동내용도 인정함)
- 위 기준은 해당기관 또는 업체(단체)의 증명이 가능한 경력에 한하여 적용한다.
 (예술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(팸플렛, 포스터, 활동확인서 등) 제출 필수)

활 동 제 한 기 준

- 성범죄 경력이 있는 자(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)
-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27조의2(문화예술교육사)에 따른 결격 사유가 있는 자
 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
 -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 -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강사료 부정수급, 수업일지 등 비위행위 전력이 있는 자
-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4조(불합격 판정기준),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5조(채용 금지)에 해당하는 자

선발 후 활동제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, 허위경력이거나 경력증명이 불가하여 응시자격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, 선발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